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양도가 제한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신설(안 제7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국가 비귀속 시설의 범위 조정(안 제24조)

「어촌·어항법」상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비관리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항만관리청이 조성한 시설 외의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서 제외함

다.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설정(안 제27조)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 중,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에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의 경우에만 비관리청이 국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의 범위(안 제28조)

비관리청 전용목적 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국가 비귀속 토지 등을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로 규정함.

마.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안 제70조, 제71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와 업종별 입주 자격을 정하고,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신청 경합 시 우선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

시설 및 위락시설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의 개발, 항만의 운영, 도시·군계획, 건축·경관, 환경, 해양레

저, 항만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 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제7조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는 경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이 분과심의회는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는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중앙심의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분과심의회 의 구분 및 기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1. 항만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2.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3. 마린나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4.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9호(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제8조(지방항만심의회 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회회의 위원장은 제9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지방심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지방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방심의회회의 기능) 지방심의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및 변동요인 분석
2. 중장기 및 연도별 항만물동량 예측
3. 그 밖에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개발의 수요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별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 정비사업계획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다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다음 각 목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다.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4.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항만시설의 위치 변경

나.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항만시설 명칭의 변경

다. 계류시설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계류시설 접안 능력의 증대

라. 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 해당 돌핀의 시설 변경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그 밖에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

수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유지·보수 공사의 구간·규모 및 기간
 3. 유지·보수 공사에 수반되는 항만시설의 사용내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오염 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제16조(항만개발사업 공고 대상 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사업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개축(보강을 포함한다)에 관한 개발사업
2.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투자비를 보전(補填)하지 아니하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항만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사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7. 단순한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변경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한정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한정한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단계의 실시계획 신청은 전 단계 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과 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및 토지의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을 위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야적장의 포장(鋪裝)
2. 창고·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船架臺)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5.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원시설(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로서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1항 각 호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 4)의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 4)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 3)의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로 본다.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

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준공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제22조(준공확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제23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금액
2. 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전단에 따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계류시설 및 항행 보조시설

나.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및 위판장시설(제4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위판장은 제외한다)

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

4. 어항구에 설치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따른 어항시설

5. 공해방지시설

6. 지원시설. 다만,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조성한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교육 시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4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1. 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은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준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개발사업비: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

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세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3.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하자보수 보증보험비용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2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27조(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공공시설 용지는 제외한다)
2.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일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의 산정절차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는 “토지”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제28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항만시설
 2. 제24조제2항의 토지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하는 경우
 3.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분구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항만관리법인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의 경비 등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경비료 등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관리법인의 세부 지정기준, 업무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

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①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건설 관련 업무”로 본다.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이하 “환경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② 환경실태조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9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감리
3.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감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시설장비는 별표 5 제9호 및 제15호의 시설장비로 한정한다.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 항행 보조시설
3. 하역시설
4.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범위·사용 등에 관하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는 별표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4. 지반개량기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사용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규모

4. 사용기간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 임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다)하여야 한다.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대상별로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용지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 ②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50조(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항만구역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 사업비·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사업비·수익률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⑫ 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와 제1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공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4.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5.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서 작성지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채택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채택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변경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

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 취소 사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
3. 대상지역의 위치
4. 지정 또는 변경·취소의 사유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서류(「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한정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이 필요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공공시설용지

제57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면적·위치·상태·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54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법 제54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 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실시할 때 효율적인 준공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62조(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항에 따른 공고일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7.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여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입주자협의회와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입주자협의회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절의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 법 제66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시기·방식·기준 및 선정계획 등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입주계약 체결·해지, 입주기업체별 임대면적, 임대료 및 입주의 실시 등 입주기업체의 입주에 관한 사항
5. 분양된 용지의 양도·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6.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변경,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6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 변경을 말한다.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변경절차 및 시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정의 내용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현황(명칭·위치·면적 및 관리시설)
3. 관리기관 지정·변경지정일

②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 1년 이내에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68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입주자격)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선박(船食)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의 선정공고일 직전 3년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연구개발업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⑥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 거래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 종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⑧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업을 위탁받은 자

⑨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제1 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 면적(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면적을 말한다) 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⑩ 관리기관은 제9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 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우선입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란 입주기업의 선정 공고일 이전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 는 경우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 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72조제1항 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 지자”라 한다)가 1종항만배후단지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건축 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 라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 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

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입주계약해지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4조(시설설치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 받은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1.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7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수 받은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① 법 제77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는 각 입주자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자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중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8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81조(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의 조치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격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

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 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귀속)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장기체류화물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작성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勞務者)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체결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다.

제87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시행자 및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 협의의 경과

제9장 보칙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97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쌓아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작한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항만배후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1조(권리·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합병

제92조(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 구성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변경허가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6. 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또는 신고기간의 연장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통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완료의 공고
9.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1. 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12. 법 제14조에 따른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13.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4.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대한 매각 등의 조치
15. 법 제18조 단서에 따른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

- 한 임대허가
1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수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허가
17. 법 제20조에 따른 항만의 관리 및 항만운영세칙 제정·운영
18. 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19.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20.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2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등록
2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2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24. 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25.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26. 법 제38조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27.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 법 제43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3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31. 법 제58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
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명령,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32. 법 제5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
33. 법 제61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대한 매각 등의 조치
34. 법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5. 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에만 해당한다)
36.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등
37. 법 제85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38. 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39. 법 제87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40. 법 제88조에 따른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41. 법 제8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42.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
로 인한 손실보상
43. 법 제95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시설 설치
44. 법 제96조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45. 법 제100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46. 법 제101조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만 해당한다)
47.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8.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9. 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토지 가액
의 평가에 관한 권한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
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29호까지, 제33호부터 제49호까지에 따른 권한
 2.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만 해당한
다)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의 결정
 3. 법 제60조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3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발굴,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2.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인적 정보 구축·

관리 및 교육훈련

3. 법 제103조제3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법 제103조제4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법 제103조제6호에 따른 국내의 항만 및 항만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설치 또는 철거 신고 대상 시설장비: 2017년 1월 1일
2.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제10장 벌칙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⑧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⑨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관리항”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한다.

⑪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나목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을 “「항만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비고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을 “「항만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⑫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 가)와 같은호다목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8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제3조제1항 관련)

1. 무역항

항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점도 남단)의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126도 35분 24.90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인근)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의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4분 25.66초, 동경 126도 45분 22.44초와 북위 37도 34분 28.47초, 동경 126도 45분 32.32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와 북위 3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

인천항	인천광역시	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운하 수면 북위 37도 32분 49.84초, 동경 126도 35분 58.13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34.44초, 동경 126도 35분 32.37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점도 남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6.05초, 동경 126도 34분 08.57초(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지점과 북위 37도 34분 44.05초, 동경 126도 33분 20.58초(세어도 북단)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04.07초, 동경 126도 30분 52.59초(영종도 북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26분 47.11초, 동경 126도 29분 10.60초(영종도 남단) 지점과 북위 37도 21분 41.14초, 동경 126도 26분 26.62초(해녀도)와 북위 37도 18분 56.16초, 동경 126도 28분 49.61초(남장자서), 북위 37도 17분 19.17초, 동경 126도 31분 58.59초(대부도 서북단 타구봉 끝단)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송도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이) 끝단에서 오이도 선착장 끝단, 옥귀도, 군자매립지 선착장 끝단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과 시화호 방조제 및 한화교 내륙쪽 해면은 제외한다.
서울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의 북위 37도 31분 48.90초, 동경 126도 55분 55.33초, 북위 37도 31분 46.94초, 동경 126도 55분 58.45초, 북위 37도 31분

평택·당진항	여의도동	33.49초, 동경 126도 56분14.90초, 북위 37도 31분 43.76초, 동경 126도 56분 31.39초, 북위 37도 32분 00.88초, 동경 126도 56분 14.5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는 제외한다.
대산항	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시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63초 지점에서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 00분 52.29초, 동경 126도 27분 09.63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 01분 08.28초, 동경 126도 27분 09.63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 01분 16.28초, 동경 126도 25분 54.63초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 01분 28.28초, 동경 126도 25분 19.64초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 03분 05.27초, 동경 126도 24분 40.64초 바. 북위 37도 03분 12.27초, 동경 126도 22분 45.65초 사. 북위 37도 01분 52.28초, 동경 126도 18분 34.67초 아. 장안도 암초 북위 37도 00분 37.28초, 동경 126도 15분 56.69초 자. 만대 북단 북위 36도 58분 43.30초, 동경 126도 18분 16.68초 차. 자각산 서단 북위 36도 58분 25.30초, 동경 126도 20분 06.67초

태안항	충청남도 태안군	방갈리 북측 북위 36도 54분 19.33초, 동경 126도 13분 21.71초의 지점에서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 54분 26.33초, 동경 126도 11분 44.71초 나. 북위 36도 53분 50.33초, 동경 126도 10분 48.72초 다. 북위 36도 55분 34.32초, 동경 126도 12분 41.71초 라. 북위 36도 55분 26.32초, 동경 126도 14분 33.70초 마. 북위 36도 54분 48.32초, 동경 126도 15분 04.70초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면화박골 서단(북위 36도 27분 14.52초, 동경 126도 29분 12.63초)에서 월도 동단(북위 36도 24분 36.54초, 동경 126도 28분 10.64초),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을 거쳐 북위 36도 19분 08.57초, 동경 126도 26분 51.65초의 지점과 보령시 신흥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 및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을 거쳐 오천국교 서단(북위 36도 26분 17.53초, 동경 126도 31분 00.62초)까지 해안선과 해독동 동단(북위 36도 26분 24.53초, 동경 126도 30분 44.63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소치곶과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33.09초, 동경 126도 39분 47.61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 서측 끝단(북위 35도 59분 7.81초, 동경 126도 43분 42.68초) 소치곶을 연결한 선과 소치곶과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0.35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31분 30.57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지점에서 아래 "가"부터 "바"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사"부터 "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 나.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 다.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 라.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 46분 55.20초, 동경 126도 20분 19.73초 마.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

		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 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아.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자.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
완도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도 상산산정과 동망봉 산정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미 동측 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여수항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및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한구미 동단(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에서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지점,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하동항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46분 56초)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을 연결하는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및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 44.1초, 동경 127도 41분 58.8초 및 북위 34도 55분 41.9초, 동경 127도 42분 15.1초), 광양시 초남(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에서 광양시 세풍리 남단(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 56분 25초, 동경 127도 47분 30초)에서 오동도 남단(북위 34도 56분 18초, 동경 127도 47분 20초),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56초),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 54분 50초, 동경 127도 48분 57초), 농섬 서단(북위 34도 55분 55초, 동경 127도 49분 31초), 대도 북단(북위 34도 56분 24초, 동경 127도 49분 54초), 광도 서북단(북위 34도 56분 31초, 동경 127도 50분 16초), 천석산 서남 돌단(북위 34도 57분 01초, 동경 127도 50분 45

삼천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및 고성군	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사천시 대방동 남방 지점(북위 34도 55분 45.17초, 동경 128도 03분 19.18초)에서 장구도 북단, 신수도 북단, 추도 북단, 신수도 최동단 돌출부(북위 34도 53분 51.18초, 동경 128도 05분 03.17초), 삼천포외항 방파제 서단(북위 34도 54분 00.18초, 동경 128도 06분 09.17초)과 외항 방파제 동단(북위 34도 54분 10.18초, 동경 128도 06분 55.16초) 및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북위 34도 54분 16.18초, 동경 128도 07분 04.16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통영시 통영시 나부동산 동단(북위 34도 49분 29.78초, 동경 128도 23분 31.27초)과 해말당단 서단(북위 34도 49분 50.81초, 동경 128도 23분 32.13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및 전송말(북위 34도 49분 34.22초, 동경 128도 26분 29.07초)에서 매일봉(북위 34도 50분 42.21초, 동경 128도 26분 53.06초) 동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장승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호엄산 202미터 산정과 동북 방향 북위 34도 51분 48.21초, 동경 128도 44분 07.9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능포리 북위 34도 53분 29.20초, 동경 128도 43분 57.97초 지점과 팔랑포 북위 34도 54분 08.19초, 동경 128도 43분 01.9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옥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리 북위 34도 53분 29.20초, 동경 128도 43분 57.97초 지점과 팔랑포 북위 34도 54분 08.19초, 동경 128도 43분 01.97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촌돌단(북위 34도 55분 09.19초, 동경 128도

마산항	거제시	36분 32.01초 지점)에서 열너봉 삼각점(△)(북위 34도 56분 37.17초, 동경 128도 35분 17.01초 지점)과 사두도 북단(북위 34도 54분 54.18초, 동경 128도 33분 50.02초) 지점 및 사곡곶(북위 34도 54분 25.19초, 동경 128도 34분 14.02초)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상대말(북위 35도 08분 36.10초, 동경 128도 35분 51.01초)과 창원시 진해구 동도(북위 35도 08분 54.09초, 동경 128도 36분 36.00초)를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
진해항	경상남도 창원시	고출산 산정(북위 35도 07분 39.10초, 동경 128도 40분 16.98초)에서 마당서(북위 35도 06분 22.11초, 동경 128도 40분 48.98초) 및 대일산 서단(북위 35도 06분 12.11초, 동경 128도 41분 16.98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부산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서남단, 가덕도 남측 끝단(북위 34도 59분, 동경 128도 49.5분) 지점, 생도 남단, 오륙도 남단,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지점, 광안대로 남측 측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및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각 목의 해면을 제외한 해면

울산항	울산광역시	가.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나. 선가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375-1 6번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내) 기부(基部)로부터 정서쪽으로 136미터 떨어진 해상점을 중심으로 하여 건너편 산(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68번지) 정점을 연결하는 일직선상에 있는 육지부와 만나는 지점 안의 해면
울산항	울산광역시	다. 서중 돌출부(북위 35도 01분 50.00초, 동경 128도 48분 33.40초)에서 대안 천수대 말 돌출부(북위 35도 01분 27.00초, 동경 128도 48분 17.60초)와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 28분 39.98초, 동경 129도 24분 52.74초), 북위 35도 27분 59.00초, 동경 129도 25분 34.7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5도 22분 42.00초, 동경 129도 22분 48.00초 지점까지 북위 35도 25분 06.04초, 동경 129도 24분 52.37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36미터 선 및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2분 06.00초와 북위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35도 30분 58.97초, 동경

포항항	경상북도 포항시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
		용한리 동단(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4분 58.71초)에서 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을 거쳐 술미 북위 36도 01분 23.76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삼척시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해·목호항	강원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와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와 북위 37도
	동해시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3.74초와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3.35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주수천 하구의 북방과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 12분 47.84초, 동경 128도 36분 00.88초)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그은 선 안의 해면과 조도 남단에서 북위 38도 11분 35.35초, 동경 128도 36분 07.39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제주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방과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31분 21.70초, 동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8.70초, 동경 126도 32분 20.69초 지점, 북위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초 지점과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제주시	

서귀포항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삼해봉 남동단 해안선(북위 33도 14분 19.82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에서 북위 33도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3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4분 00.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26.82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3도 14분 38.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1.74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5분 01.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4.81초, 동경 126도 25분 06.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강정항 동방파제 단부 북위 33도 13분 37.68초, 동경 126도 28분 41.51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29.66초, 동경 126도 28분 46.4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8.93초, 동경 126도 28분 59.3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19.34초, 동경 126도 29분 41.00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0.90초, 동경 126도 29분 38.88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37.67초, 동경 126도 29분 30.55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9.10초, 동경 126도 29분 26.84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2.57초, 동경 126도 29분 26.9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2. 연안항

항명	위치	수상구역	육상구역
용기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 백령면	북위 37도 57분 26.86초, 동경 124도 44분 46.16초(용기원산 동단) 지점에서 북위 37도 56분 45.87초, 동경 124도 44분 06.16초 지점과 북위 37도 57분 10.86초, 동경 124도 43분 20.17초(사곶해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
연평도항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동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7도 39분 14.27초, 동경 125도 42분 57.26초 지점, 북위 37도 39분 09.95초, 동경 125도 42분 43.6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대천항	충청남도 보령시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과 신흥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인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에서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44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	

		한 선 안의 해면
상왕등도	전라북도	상왕등도 북측 오끼바위 북위 35도 39분 55.06초, 동경 126도 06분 43.59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39분 26.68초, 동경 126도 09분 00.95초 지점, 북위 35도 39분 21.37초, 동경 126도 06분 38.3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항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송공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40.76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25.7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0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4분 52.75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41.17초, 동경 126도 14분 52.75초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신안군	
	압해면	
홍도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40분 29.22초, 동경 125도 11분 36.09초 지점과 북위 34도 40분 54.22초, 동경 125도 12분 00.0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흑산도항	전라남도	남방파제 기점에서 외영산도 동단, 내영산도 최북단을 거쳐 읍동 북동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신안군	
	흑산면	
가거항리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04분 52.21초, 동경 125도 05분 38.39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04분 30.94초, 동경 125도 05분 07.8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진도항	전라남도 진도군	북위 34도 22분 42.36초, 동경 126도 07분 32.80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1분 58.36초, 동경 126도 07분 27.80초 지점, 북위 34도 21분 56.36초, 동경 126도 07분 44.80초 지점, 북위 34도 22분 09.86초, 동경 126도 07분 53.80초 지점 및 북위 34도 22분 03.36초, 동경 126도 08분 07.8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땅끝항	전라남도 해남군	북위 34도 17분 46.10초, 동경 126도 31분 41.02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7분 46.19초, 동경 126도 32분 04.19초 지점, 북위 34도 18분 07.87초, 동경 126도 32분 04.0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화홍포항	전라남도 완도군	북위 34도 19분 01.39초, 동경 126도 40분 09.63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8분 44.39초, 동경 126도 39분 38.64초 지점, 북위 34도 18분 00.40초, 동경 126도 40분 13.63초 지점 및 북위 34도 18분 15.40초, 동경 126도 40분 43.6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신마항	전라남도 강진군	북위 34도 26분 56.34초, 동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 및 북위 34도 26분 57.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마량면	
녹동신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동으로 250미터 지점(해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같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방파제

	도양읍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송도, 상송도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도 방향으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거문도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북으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
나로도항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 북쪽 끝단, 동측파제 시점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국도항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동항리	북위 34도 32분 56.45초, 동경 128도 26분 45.59초 지점을 기점으로 북위 34도 33분 07.86초, 동경 128도 26분 31.64초 지점, 북위 34도 32분 48.61초, 동경 128도 26분 08.64초 지점, 북위 34도 32분 38.04초, 동경 128도 26분 21.56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화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북위 34도 47분 33.64초, 동경 128도 22분 53.64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46분 47.54초, 동경 128도 22분 50.13초 지점 및 북위 34도 46분 47.64초, 동경 128도 23분 08.6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부산남항	부산광역시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선 (영도대교) 및 북위 35도 04분 34.02초, 동경 129도 01분 29.98초 지점에서 북위 35도 04분 50.13초, 동경 129도 02분 23.42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구룡포항	경상북도	사라말과 병포리 북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포항시 구룡포읍	
강구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교 북단의 북위 36도 21분 26.2초, 동경 129도 22분 53.7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31.6초, 동경 129도 22분 56.8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50.1초, 동경 129도 23분 38.5초 지점, 북위 36도 21분 50.1초, 동경 129도 23분 47.1초 지점, 북위 36도 20분 38.9초, 동경 129도 23분 46.7초 지점, 북위 36도 20분 39.0초, 동경 129도 23분 10.7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
후포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동방파제 기점으로부터 북위 36도 40분 10.76초, 동경 129도 27분 25.48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그 점에서 73도로 북서쪽 육지를 향하여 그은 선 안의 해면
울릉항	경상북도 울릉군	가두봉 남단에서 살구남 동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해면
주문진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 동단에서 정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추자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상추자도 대서리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7분 57.76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8분 25.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5.53초, 동경 126도 18분 32.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29.53초, 동경 126도 18분 06.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과 하추자도 예초리 북위 33도 57분 21.53초, 동경 126도 19분 57.75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57분

애월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33.53초, 동경 126도 19분 43.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1.53초, 동경 126도 19분 33.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06.53초, 동경 126도 19분 30.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서방과제 호안 기점으로부터 북위 33도 27분 50.62초, 동경 126도 19분 21.59초의 지점과 북위 33도 28분 7.33초, 동경 126도 19분 21.7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13.11초, 동경 126도 19분 36.92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8.01초, 동경 126도 19분 54.07초 지점, 북위 33도 28분 7.71초, 동경 126도 19분 53.94초 지점 및 북위 33도 28분 54.76초, 동경 126도 19분 51.88초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한림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선과 웅포리 제4삼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한림향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화순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전면(북위 33도 13분 57.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에서 북위 33도 13분 43.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41.82초, 동경 126도 19분 34.76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20분 07.76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6.82초, 동경 126도 20분 12.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성산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안의 해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방과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28분 53.73초, 동경 126도 55분 42.57초 지점과 북위 33도 28분 51.73초, 동경 126도 56분 20.57초의 지점 및 동방과제 기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갑문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항명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목호항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 (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항 명
국가관리연안항 (11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연안항 (18개)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홍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제24조제2항 관련)

1. 부두별 귀속토지

일 반 부 두		컨 테 이 너 부 두	
소형부두(적재 톤 수 2만톤급 미만)	대형부두(적재 톤 수 2만톤급 이상)	피 더 부 두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 300미터	안벽으로부터 300미터 ~ 500미터	안벽으로부터 500미터 ~ 800미터

2.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조성한 토지 중 공공시설 용지

비 고

- 제1호의 안벽은 그 안벽의 수역(水域) 측 끝단을 기준으로 한다.
- “피더 부두”(Feeder Harbor)란 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 소형 컨테이너 선박(피더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 부두의 용도, 화물의 종류, 입지여건, 부두에 설치되는 하역장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업 전용 목적의 토지
 - 다. 그 밖의 컨테이너 부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장래 물동량 및 하역능력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범위 (제38조 관련)

- 갑문본체: 상·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 충수(充水)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 취수·배수설비: 취수·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무인 트랜스포터(Automatic Guided Vehicle, Transporter)를 포함한다.
-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야드 채시(Yard Chassis)
- 십로더(Ship loader) 및 십언로더(Ship Unloader)
-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레벨러핑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Bridge Type Crane)을 포함한다.
-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 로딩 암>Loading Arm)
-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 하역작업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제41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가. 항만시설(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긴급안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나. 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3. 정밀안전점검

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등 수역시설과 관련하여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항만시설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넢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돌핀(넢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소형선부두(넢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넢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소형선부두(넢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시설,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 그 밖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호	200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호	200		
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34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6호의2	200		
사.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7호	200		
아.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8호	200		
자.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113조제1항제10호	200		

아니한 자					
차.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 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9호	50	70	100	
카. 법 제73조제3항, 제74조제5 항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3조제1항제10 호	50			
다.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66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 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 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 한 자	법 제113조제1항제11 호	50	70	100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 은 자를 포함한다),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113조제1항제12 호	50	70	100	
하.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 입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3 호	50	70	100	
가. 법 제87조제6항 후단을 위반	법 제113조제1항제15	100	150	200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 막거나 방해한 경우	호				
나. 법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 여 진술을 거부한 자	법 제113조제1항제16 호	50	70	100	
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법 제113조제2항	20	5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44-200-5921